

〈보고〉

로스쿨 도입 이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 서울대와 도쿄대·교토대의 비교 -

千景燾*·李相勳**

I. 조사 배경

2009년 3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여 법학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로스쿨 시대의 개막이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부정적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학이 일종의 직업교육기관이 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의 교육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학문후속세대가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침 일본 역시 2004년에 로스쿨¹⁾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법학이 일본의 강력한 영향 아래 성립되고 발전되었음을 고려하면, 로스쿨 도입 이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시스템이 어떻게 변용되었고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유의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2014년 2월, 이 글의 공동저자 중 천경훈을 포함한 몇몇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도쿄대와 교토대를 방문하여 로스쿨 도입 이후 두 학교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현황을 조사하고, 두 학교의 교수들과 서울대의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시 방문조사 결과는 법학연구소의 연구보고서²⁾에 일부 수록되었을 뿐 따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1) 일본에서의 정식 명칭은 法科大學院이다. 이하에서는 ‘로스쿨’이라는 표현과 ‘법과대학원’이라는 표현을 혼용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자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연구사업의 활성화 방안(연구책임자: 송석윤)(2014. 6), 3면 이하.

공간되지는 않았기에,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자료화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즉 이 글은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도쿄대, 교토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현황에 관한 간략한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법대³⁾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를 얻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그러한 비교를 위해 우선 II.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의 서울법대의 학문후속세대 현황을 정리한다.⁴⁾ III.에서는 7개의 질의에 대한 도쿄대, 교토대 측의 답변을 정리하고, IV.에서 약간의 소감과 함께 글을 맺고자 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한국 및 서울법대의 상황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2007년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법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2008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3년제 전문석사과정, 이른바 로스쿨)이 인가를 받았다.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25개 대학교의 학부과정 법학과는 신입생 선발을 중단하였다.⁵⁾ 학교 별로 최대 150명에서 최소 40명까지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전국 입학정원 합계는 2,000명이다. 2012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2015년 2월에 제4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로스쿨의 도입과 더불어 변호사 선발 제도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종래의 사법시험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직전 1월에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는다.⁶⁾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최대 5회까지 응시

3) 이하 ‘서울법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4) 서울법대의 현황은 도쿄대, 교토대 교수들에게도 면접조사 전에 미리 일역 서면으로 제공되었다.

5) 2008년 및 그 이전에 법학부에 입학한 학부생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대부분 졸업함에 따라 학부 개설과목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7학년도를 끝으로 법과대학을 폐지할 예정이다.

6) 종전의 사법시험은 2017년에 마지막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그때까지 선발인원은 순차적으로 감소된다.

할 수 있다. 합격자 수는 2012년 첫 시험부터 2015년 제4회 시험까지 매년 대체로 1,500명(입학정원의 75%) 내외로 일정하게 정해지고 있으므로, 불합격자가 누적될 수록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낮아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응시자의 40%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2015년 4월까지 4년간 약 6,0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었다.

2. 제도상 일본과의 차이점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2004년에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과대학원’을 도입하였다. 두 나라 제도의 주요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학부 병존 여부: 한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은 2008년 3월 입학생을 마지막으로 학부과정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고, 기존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부과정이 유지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여전히 4년제 학부 법학과 과정이 남아 있다.
- 교육 연한: 한국의 경우 학부 법학전공자(기수자)와 비법학전공자(미수자) 사이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다. 반면 일본의 경우 기수자는 2년 과정, 미수자는 3년 과정으로 로스쿨을 수료하도록 하여 교육연한 자체를 달리 한다. 즉 법학전공자는 학부 4년 + 로스쿨 2년의 교육을 받는 반면, 비법학전공자는 학부 4년 + 로스쿨 3년의 교육을 받는다.
- 변호사시험 자격요건: 한국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그 해 2월에 졸업예정이어야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법과대학 4년 졸업 후에 굳이 로스쿨 기수자 과정 2년을 마치지 않고 예비시험을 거쳐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법학부 과정의 성적우수자들이 로스쿨 졸업 대신 예비시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한국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의 일괄적인 실무수습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 대신 각자 자신이 취업한 곳에서 6개월 연수를 받은 후⁸⁾

7) 처음부터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 예비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로스쿨에 일단 진학한 후 재학 중에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로스쿨을 중퇴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한다.

에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는다. 반면 일본의 경우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예비시험 합격자는 사법시험(이른바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합격자는 司法研修所(한국의 司法研修院에 해당)에서 1년간 수습을 받아야 한다. 즉 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소에서의 실무교육이라는 과거의 역할분담이 로스쿨 도입 후에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일본 로스쿨의 실무교육 부담은 한국 로스쿨에 비해 현저히 작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제도상의 차이점

	한국	일본
학부 병존여부	법전원 인가학교는 학부과정 폐지	학부병존
교육연한	3년	법학 기수자: 2년 법학 미수자: 3년
시험 자격요건	법전원 졸업(예정)자	로스쿨 졸업(예정)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취업후 각자 6개월간 연수 (미취업자는 변협에서 연수)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수습

3.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한 서울법대의 상황

가. 서울법대의 학위과정

서울대학교는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종래 학사과정(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과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을 운영하여 왔다. 그에 더해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법학전문석사 및 법학전문박사 학위 과정이 신설되었다. 2015년 9월 현재 운영 중인 정규 법학 학위과정은 <표 2>와 같다.

8)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되면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로 선발되면 법무연수원에서 각각 연수를 받는다.

<표 2> 서울법대의 법학 관련 학위과정

설치기관	학위명	수업연한	이수학점	비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4년	140학점	2008. 3. 최종입학생 선발 후 2018. 2.까지만 존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3년	90학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법학전문박사(SJD)	1.5년	24학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년	24학점	
	법학박사(PhD)	2년	36학점	

즉 ‘서울법대’라고 통칭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3개 교육기관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학전문석사, 법학전문박사 등 5종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3개 교육기관 및 5종의 학위과정은 모두 동일한 교수진이 담당한다. 법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법과대학의 학사과정은 2017학년도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2018년 3월 이후에는 2개 교육기관에서 4종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참고로 종래부터 존재하여 온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이른바 PhD)과 로스쿨 도입 후 신설된 전문박사과정(이른바 SJD)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PhD 과정은 입학시 필답고사를 실시하나, SJD는 필답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및 구술고사로만 선발한다. 둘째, SJD 수업연한은 3개 학기이고 이수학점도 24학점인 반면,⁹⁾ PhD 과정은 4개 학기, 36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학기당 등록금은 PhD가 SJD의 약 반액 정도로 저렴하다. 넷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SJD 과정은 실무경력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과 실무연관성을 강조하는 편이다.¹⁰⁾ 그러나 최종 학위논문에 관해 양자는 동등한 수준의 학문적 완성도를

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조 (수업 및 재학 연한)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3개 학기로 한다.

제12조 (과정 수료 학점)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논문 연구 교과목 제외)으로 한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첫 2개 학기 이내에 24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 (교육목표) 전문박사학위과정은 법학을 이미 배운 자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호 질적 우열관계는 없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전문박사 과정을 졸업하여 전문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총 5명이다.

나. 서울법대 교수진 현황

현재 서울법대 교수진은 어떤 경로를 통해 양성 및 충원되고 있는가? 매우 거칠고 대략적인 구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교수진의 전형적인 커리어 트랙(career track)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제1유형(해외박사): 학부 졸업 → (국내 대학원 진학) → 외국 박사학위 취득 → (국내 타대학 교수로 부임) → 서울대학교 교수로 채용
- 제2유형(국내박사): 학부 졸업 → 국내 대학원 진학 → (재학 중 해외 연수) → 국내 박사학위 취득 → (국내 타대학 교수로 부임) → 서울대학교 교수로 채용
- 제3유형(실무경유): 학부 졸업 →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학원 진학) → 실무에 종사 → (해외 또는 국내 대학원 수학) → (국내 타대학 교수로 부임) → 서울대학교 교수로 채용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제1유형이 교수진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전후로 제3유형, 그 중에서도 실무를 경유하여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3유형에 속하는 교수 중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에서 교수로 임용되고, 그 후에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예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실무경력을 가진 교원,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른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이른바 실무교원들도 거의 전원이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점이 다른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즉 서울법대의 경우 제3유형에 해당하는 교수들도 근본적으로 인생의 일정 시기에 학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스스로를 실무가라기

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기초로서 법학의 전문지식의 연구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8조 (입학자격)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학전문석사학위소지자
2. 국내외에서 전호의 석사학위과정 외의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사과정이나 대학원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전 2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보다는 학자로 인식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들 서울 법대 교수들의 박사학위 취득국가는 <표 3>과 같이 다양한 편이다.

<표 3> 서울법대 교수진의 박사학위 취득 국가

(2015. 9. 1. 현재) (계: 59명)

국내	독일 (Dr.jur.)	미국 (SJD/PhD)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박사학위 미소지
24	15	9	3	1	1	1	5 ¹⁾

전체 교수 59명 중 법률가로서 자격을 소지하고 짧게라도 실무경험이 있는 교원은 판사 11명, 검사 1명, 변호사 7명, 판사+변호사 2명, 헌법연구관 4명, 미국변호사(미국 로클릭 포함) 6명, 중국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 1명, 외교관+미국변호사 1명 등 총 34명으로 절반이 넘는다(약 58%).¹²⁾ 짧게라도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의 숫자가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은 후술하는 일본 로스쿨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다. 대학원 현황

입학생, 재적생, 등록생 숫자로만 보면 서울법대의 대학원 과정은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석사과정으로 약 125-150명, 박사과정으로 약 50-70명, 전문박사과정으로 10-20명이 입학하고 있다. 즉 일반대학원의 입학생 숫자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에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입학 경쟁률은 오히려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석사, 일반박사, 전문박사 등록생의 숫자는 최근 460명을 넘어섰고, 휴학생까지 합하면 재적생은 500여 명에 달한다.

11) 이들 5명 모두 5년 이상 법조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JD 소지자 1명(미국인 교원), 미국 SJD 수료자 1명, 국내 박사과정 수료자 2명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법률가로서는 아니지만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에서의 실무경험자도 1인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이른바 실무경력교원(변호사 또는 외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은 2015. 9. 1. 현재 23명이다.

<표 4> 서울법대 최근 6년간 대학원 신입생 추이(전문석사 제외)

과 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석 사	144	147	147	135	132	126
박 사	54	51	55	43	57	69
석박통합	-	-	7	15	-	-
전문박사	15	10	12	12	12	20

<표 5> 서울법대 최근 6년간 대학원 등록생/휴학생 추이(전문석사 제외)

과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2	1	2	1	2	1	2	1	2	1	2
석사	등록	236	262	227	258	228	244	222	236	213	251	283	277
	휴학	143	55	126	49	134	50	108	48	114	66	36	30
박사	등록	74	90	79	86	85	102	107	106	117	112	158	159
	휴학	23	22	23	20	3	23	36	25	30	31	13	11
전문 박사	등록	7	14	11	16	13	12	12	16	11	12	18	27
	휴학		2	3	2	4	2	3	2	4	5	1	3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등으로 재직 중인 이른바 ‘겸업 대학원생’이고 ‘전업 대학원생’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전업 대학원생 중에는 중국을 위주로 한 유학생의 비중이 증가 중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교수 보다는 실무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1학기 강의연구조교를 맡은 53명은 법학전문대학원생 4명, 외국인 일반대학원생 5명(박사과정 1명, 박사연구생 3명, 석사연구생 1명), 내국인 일반대학원생 44명(박사과정 11명, 박사연구생 7명, 석사과정 22명, 석사연구생 4명)인바, 이들 일반대학원생 49명이 전업 대학원생으로 추정되고, 그 중 본격적인 학문후속세대는 2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대량으로 입학한 대학원생들은 성공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가? <표 6>에서 보듯이 수료자의 수는 상당히 많으나, <표 7>에서 보듯이 수료 후 학위논문 심사까지 통과한 학위취득자의 수는 <표 4>에 나타난 입학생 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당수의 입학생이 실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학업에 전념할 시간을 갖지 못하여 휴학을 반복하다가 제적되거나, 자퇴하거나, 또는 수료 후 논문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입학하기만 하면 학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질적 통제가 이루어진

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표 7>에 나온 박사학위 취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미 실무 종사 중이거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가 많았다.

<표 6> 서울법대 최근 6년간 대학원 수료자 추이(전문석사 제외)

과 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2	1	2	1	2	1	2	1	2	1	2
석 사	66	38	60	40	62	49	45	41	48	40	30	50
박 사	18	10	23	22	16	13	14	20	26	18	17	31
전문박사	-	-	-	-	-	5	4	3	9	3	4	5

<표 7> 서울법대 최근 6년간 대학원 졸업생(학위취득자) 추이(전문석사 제외)

과 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석 사	52	46	54	57	49	48
박 사	20	19	22	21	14	15
전문박사	-	-	2	1	1	1

그렇다면 새로 도입된 로스쿨 졸업자 중에는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전업 또는 겸업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표 8>은 서울법대 일반박사 및 전문박사과정 진학생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다.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4명만이 일반박사과정에 진학하였으나, 그 후로는 박사과정 진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사과정에 지원하였다가 3:1을 넘는 경쟁률을 넘지 못하고 낙방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다만 이들 박사과정 진학자 중 절대다수는 실무에 종사 중이거나 군복무 중인 ‘겸업 대학원생’으로 파악되고, 전업 대학원생의 숫자는 여전히 매우 적다. 이들 겸업 대학원생 중 우수한 인재들을 선별하여 전업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이다.

<표 8> 서울대 박사진학생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졸업자/졸업예정자

과 정	2012		2013		2014		2015	
	1	2	1	2	1	2	1	2
박 사	3	1	13	4	20	5	22	5
전문박사	-	-	1	-	2	1	1	3

Ⅲ.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일본의 상황

로스쿨 도입 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공동저자 중 천경훈을 비롯한 몇몇 교수들이 일본의 주요 대학인 도쿄대(東京大), 교토대(京都大)를 방문(도쿄대 방문일자: 2014. 2. 10; 교토대 방문일자: 2014. 2. 13.) 하여 각 대학의 학장을 비롯한 주요교수들과 회의(간담회)를 진행하였다.¹³⁾ 각 대학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의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문¹⁴⁾과 질문지를 작성하여 미리 송부하고, 방문 당일에는 질문지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필요시 자료를 수령하였다. 방문 전에 미리 보낸 7가지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다.

【질문 1】 현재의 교수진은 어떤 커리어트랙(career track)으로 선발, 양성되었는지? 조수를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율은 대체로 어떠한지?

【질문 2】 일본의 경우 장래의 교수 요원은 어떻게 선발 및 양성할 예정인지? 종래의 조수 제도가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 3】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장래의 교수 요원으로 리크루트, 양성하는 데 대한 교수 사회의 생각은 어떠한지? 실제 학문후속세대로 유입된 로스쿨 졸업생의 수와 비율은?

【질문 4】 실무가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와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명 간의 갈등은 없는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은 어떠한지?

【질문 5】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겸업 대학원생들이 일본에도 있는지? 그 경우 질적 통제(quality control)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 6】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재원조달 및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3) 도쿄대 간담회 참여자 명단: 山口厚(야마구치 아쓰시, 학장, 형법 교수), 西川洋一(니시카와 요이치, 부학장, 차기 학장, 동양법제사 교수), 神田秀樹(칸다 히데키, 상법 교수), 大村敦志(오무라 아쓰시, 민법 교수), 白石忠志(시라이시 타다시, 경쟁법 교수), 沖野眞己(오키노 마사미, 민법 교수), 川出敏裕(카와이데 토시히로, 형사소송법 교수), 橋爪隆(하시즈메 타카시, 형법 교수), 加毛明(카모 아키라, 민법 준교수).

교토대 간담회 참여자 명단: 山本克己(야마모토 카츠미, 학부장, 민사소송법 교수), 松岡久和(마츠오카 히사카즈, 민법 교수), 洲崎博史(스자키 히로시, 상법 교수), 高山佳奈子(다카야마 카나코, 형법 교수).

14) 대체로 이 글의 II.에서 기술한 한국의 상황에 관한 설명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회의 전에 미리 이메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다시 구두로 설명하였다.

【질문 7】 일본 대학원 과정으로 유학 오는 외국학생들의 선발 기준은 어떠하며, 이들에게는 일본 학생들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이하에서는 위의 7개 질문사항 별로 도쿄대와 교토대 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¹⁵⁾

【질문 1】 교수진의 커리어트랙

현재의 교수진은 어떤 커리어트랙(career track)으로 선발, 양성되었는지? 조수(助手, 또는 조교)¹⁶⁾를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율은 대체로 어떠한지?

가. 도쿄대

<東大: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도쿄대의 경우 현재까지도 <도쿄대 법대 졸업 → 助手(助教)>가 가장 전형적인 법과대학 교수진의 커리어 트랙(career track)으로서, 교수회 구성원이자 법조양성전공교육회의 구성원인 연구자교원 53명 중 46명(약 87%)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19명은 조교에서 바로 도쿄대 교수로 임용되었고, 27명은 다른 대학의 교원을 거쳐 도쿄대 교수로 임용되었다.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전체 교원 53명 중 6명). 본격적인 해외연수도 교수가 된 후에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 53명 중 법조실무 경력자는 3명(재판관 출신 1명, 변호사 출신 2명)에 불과하며, 이 3명을 포함하여 사법연수소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¹⁷⁾ 53명 중 도쿄대 이외의 학부를 졸업한 교원은 단 2명이다.

이처럼 도쿄대의 교수진은 처음부터 조수 또는 조교로 임용되어 연구에 전념한 ‘연구자교수’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도쿄대 출신만으로 교수진을 구성하는 폐쇄성이 서울대보다도 훨씬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로스쿨 전환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전환 이후 실무를 경험한 교수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서울법대와는 크게 다른 면모를 보인다.

15) 한편 일본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하여 일본학술회의 법학위원회 법학계대학원 분과위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공표한 2011년 9월 22일자 提言을 참조: “法学研究者養成の危機打開の方策—法学教育・研究の再構築を目指して”.

16) 이전에는 ‘조수(助手)’라고 불렀던 것이고 현재는 ‘조교(助教)’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다. 현재 양자는 같은 것이라고 한다.

17) 다만 <東大: 표 1>의 주기(註記)에 달려 있듯이 교수회구성원, 법조양성전공교육회의 구성원, 연구자교원에 대해서만 작성된 것이고, 그 이외에 ‘법과대학원 전임실무교원’이 3명 더 채용되어 있다.

<東大: 표 1> 동경대 법과대학 교수진 career track

	東大法卒 → 助手(助教)		東大法卒 → 東大法博士修了		他大法卒 → 東大法博士修了	他大法卒 → 他大法博士修了	東大法卒 → 裁判官	계
	→ 東大法教員	→ 他大法教員 → 東大法教員	→ 東大法教員	→ 他大法教員 → 東大法教員	→ 他大法教員 → 東大法教員	→ 他大法教員 → 東大法教員	→ 東大法教員	
60~65세	2	2		1 그 중 司法研修所/ 변호사 1	1			6
55~59세	5 그 중 LLM 1	9 그 중 LLM/ SJD 1, 東大法修士 1				1 그 중 LLM/SJD 1		15
50~54세	4 그 중 東大法修士 2	5	1	2 그 중 司法研修所/ 변호사 1			1 그 중 司法研修所/ LLM/ SJD 1	13
45~49세	4	6 그 중 LLM 1						10
40~44세	1	1						2
35~39세	1	2						3
30~34세	1	2						3
25~29세	1 그 중 司法研修所 1							1
계	19	27	1	3	1	1	1	53

※ 모임의 취지에 따라 「교수회구성원이자 법조양성전공교육회의구성원인 연구자교원」에 대해서만 집계하였음(2013년 5월 1일 현재).

나. 교토대

앞서 보았듯이 도쿄대의 교수양성 코스는 <학부 → 조수 → 교수>가 대부분이고 박사학위 소지자 수가 매우 적으나, 교토대의 경우 <학부 → 조수 → 교수>와 <학부 → 박사(PhD 3년) → 교수>가 반반 정도라고 한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 → 박사 → 교수>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최근 임용되는 교토대 교수들은 <로스쿨 → 조수 또는 박사 → 준교수>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기초법 교원 1명이 <학부 → 修士 → 박사 → 교수>를 통해 선발되었다. 그리고 민법에서 1명이 실무에서 바로 교수로 임용되었는데(학위는 미소지)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한편 교토대에는 외국인 교수로 오스트리아인 교수가 1명 있고, 현재 독일(켈른 대)과 오스트리아(비인 대)의 외국대학과도 교류하고 있다.

【질문 2】 로스쿨 제도 아래서의 교수 요원 양성 계획

일본의 경우 장래의 교수 요원은 어떻게 선발 및 양성할 예정인지? 종래의 조수 제도가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가. 도쿄대

도쿄대는 기본적으로 종래의 교수 양성 및 선발제도, 즉 우수한 학생을 조교로 선발하여 학문적 수련을 거쳐 교수로 채용하는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쿄대의 조교 선발 인원 및 박사과정 진학 인원은 <東大: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2004년 로스쿨(법과대학원) 도입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공에 따라서는 감소세가 더욱 심각한데, 일례로 2004년 이후 상법 조교로 선발된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¹⁸⁾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조교나 연구자가 되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에는 조교 인원이 약간 늘었다. 아마도 변호사 시장의 침체가 그 원인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어쨌든 로스쿨 도입 직후보다는 사정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¹⁸⁾ 2014년 2월 면담 시까지는 그러하였다(칸다 교수의 진술). 그런데 2015년 8월에 도쿄대 상법 교수들과의 대화중에 들은 바로는 그 후 3명이 추가로 조교로 선발되었다고 한다.

<東大: 표 2>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의 조교취임자, 박사전공진학자 수

연도	조교	박사	계	연도	조교	박사	계
1994	6	8	14	2004	5	10	15
1995	5	8	13	2005	3	7	10
1996	6	8	14	2006	6	12	18
1997	13	10	23	2007	8	6	14
1998	6	13	19	2008	6	6	12
1999	12	11	23	2009	6	1	7
2000	6	10	16	2010	4	4	8
2001	7	13	20	2011	4	3	7
2002	6	9	15	2012	7	1	8
2003	8	5	13	2013	9	2	11

※ 일본인 법학전공자에 한함.

조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도쿄대 법학부 또는 도쿄대 로스쿨 졸업생(졸업 예정자 포함)이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생 중에도 예비시험과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조교가 된 사례가 있다. 로스쿨 출신 조교들도 거의 전원이 도쿄대 법학부 출신이고, 공대 출신으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를 하다가 조교로 된 경우도 1명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조교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성적이 상위권이어야 하고(해당 과목에서 A+ 또는 A0 이상), 장래 지도교수의 승낙(확답)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후자가 중요하다. 조교 선발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하지만, 지도교수의 승낙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이러한 선발은 도쿄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며, 따로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은 공식적으로는 요건이 아니나, 조교로 선발될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이므로 로스쿨 도입 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조교로 활동하고 있다.

조교로 임용되면 3년간 경제적 지원(월 20만 엔, 연 300만 엔 내외의 보수)을 받으면서 그 기간 안에 조교논문을 완성해야 하고, 그 후에 준교수나 강사로 취직하는 등 대부분 직장을 얻고 있다. 예전에는 곧장 도쿄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른 대학에 우선 임용되어 근무한 후 도쿄대에 임용되는 추세이다(앞의 <東大: 표 1> 참조).

한편 현재 대학원에는 중국, 한국, 대만의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있고, 사실상 박사과정은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전유물이다. 앞으로 일본인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시킬 것인지, 그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도 고민이라고 한다.

나. 교토대

교토대의 경우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를 교수로 임용하는 쪽으로 정착되어 가는 중이다. 이 점에서 여전히 조교 제도가 지배적인 도쿄대와 많이 다르다. 종래와 같이 학부에서 조수(조교)를 거쳐 교수가 되는 트랙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고, 박사후기과정(한국의 박사과정에 해당)을 수료해야 할 것이다. 기존 조수들에게도 박사후기과정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여 이제 모두 박사후기과정으로 옮겼다. 실제로 <로스쿨 졸업 → 박사후기 수료>를 거쳐 준교수로 선발된 예가 있다.

<京大: 표 2-1> 修士과정 입학자(공법·민형사법) (로스쿨을 경유하지 않은 자)

연도	인원 수	연도	인원 수
1998년	6인	2006년	2인 (공법 2)
1999년	8인	2007년	1인 (민형사법 1)
2000년	9인	2008년	1인 (공법 1)
2001년	5인	2009년	0인
2002년	5인	2010년	1인 (공법 1)
2003년	4인	2011년	1인 (공법 1)
(2004년 로스쿨 개설)		2012년	3인 (공법 3)
2004년	2인 (공법 1·민형사법 1)	2013년	2인 (공법 2)
2005년	3인 (공법 3)		

※ 참고: 위 표의 공법은 거의 다 국제법(헌법, 행정법 등은 로스쿨 수료자를 통해 충원).

<京大: 표 2-2> 로스쿨 수료자로서 연구직을 희망한 자

연도	내용	
2006년	조교 2	박사후기 5
2007년	조교 1	박사후기 1
2008년	조교 3	박사후기 3
2009년	조교 4	박사후기 1
2010년	조교 1	박사후기 6
2011년	-	박사후기 3
2012년	-	박사후기 4
2013년	-	박사후기 3

* 조교는 11인 중 10인이 취직(그 중 京大 準教授 6인).

** 2010년까지의 박사후기과정 진학자 16인 중 8인 수료(=박사학위취득), 5인 취직.

교수들도 로스쿨 전환 이후에는 석사(일본어로 修士) 과정 대신 로스쿨을 졸업하고 박사후기과정으로 들어오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이는 로스쿨 도입 이후 석사과정 입학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다(<京大: 표 2-1> 참조). 2004년 이후 10년간 석사과정 입학생은 16명에 불과한데, 그 중 민·형사법 전공은 단 2명에 불과하고, 공법전공 14명의 대다수는 국제법 전공자로서, 헌법·행정법·형법전공의 연구자는 석사과정 대신 로스쿨 졸업생들을 통해 충원해 가고 있다(<京大: 표 2-2> 참조).

요컨대 교토대의 향후 교수 양성은 적어도 국내실정법 과목에 관한 한 <로스쿨 → 박사후기과정 → 교수> 트랙으로 통일해 갈 예정이다. 그러나 조수 대신 박사후기과정을 밟도록 하는 제도가 잘 정착될지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 교토대 교수들의 생각이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박사후기과정에 진학하고 있는가? 학부생은 바로 박사후기로 진학할 수 없고 석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로스쿨생과 석사 수료생이 박사후기과정(우리의 박사과정에 해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학부 법학 비전공자가 로스쿨 졸업 후 박사를 마치고 교수가 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학부 법학전공자들이 석사 또는 로스쿨을 거쳐 박사후기과정에 진학하고 있다. 결국 로스쿨 우수 졸업생을 어떻게 박사후기과정으로 유인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일단 우수하고 학자 성향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개인적으로 박사후기과정 진학

을 권유하고 있다. 우수한 학부 또는 로스쿨 졸업생이 실무경력을 쌓은 뒤 학교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된 예는 거의 없다.

【질문 3】 로스쿨 졸업생의 학계 진출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장래의 교수 요원으로 리크루트, 양성하는데 대한 교수 사회의 생각은 어떠한지? 실제 학문후속세대로 유입된 로스쿨 졸업생의 수와 비율은?

가. 도쿄대

로스쿨 졸업생의 교수 요원 진출에 대해 도쿄대 교수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쿄대 법대는 실무뿐만 아니라 학문을 가르치는 것에도 중점을 두므로, 우수한 로스쿨 학생들이 연구자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학부생이 바로 조수가 되어 3년 만에 조수논문을 쓰게 되었으나, 지금은 로스쿨에서 교육을 추가로 받은 사람들이 조수가 되므로 오히려 더 바람직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로스쿨 졸업생 중 연구자로 진출하는 인원수는 다소의 변동이 있으나 매년 평균 3명 정도이다. 특히 2011년에는 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7명으로 급등하였다.

<東大: 표 3-1> 로스쿨 졸업생 중 연구자가 된 자

수료년도	연구자로 된 수료생 수(명)	수료생 수(명)	연구자 비율(%)
2005년	1	178	0.56
2006년	2	282	0.71
2007년	6	276	2.17
2008년	4	281	1.42
2009년	4	297	1.35
2010년	3	268	1.12
2011년	1	242	0.41
2012년	7	224	3.13

그러나 우수한 로스쿨 학생을 연구자로 꾸준히 영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쿄대 교수들도 자신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도 우수한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그치지 활발하게 진학하지 않는다. 연구자로 관심을 표했던 학생들도 결국 변호사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의 권유로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

다고 한다. 하지만 교수들은 이 학생들이 장래에는 연구자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로스쿨 졸업생의 연구자 진출의 장점으로 이들이 학부에서 다른 분야를 공부하였다는 점¹⁹⁾과 실무의 견식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의 외국어(특히 독어, 불어) 학습기회가 부족하여 외국문헌 독해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수요가 많다는 점도 이들을 연구자로 리크루트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다.²⁰⁾

나. 교토대

교토대도 우수한 로스쿨 학생들을 교수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박사후기과정의 주류는 아직까지 자교 석사과정 출신이지만, 자교 로스쿨 출신자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에 로스쿨 정원 140명 중 5명이 박사후기과정에 진학한 이래, 매년 로스쿨에서 대략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박사후기과정에 입학하고 있고(<京大: 표 2-2> 참조), 2014년에는 4명이 지원하였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자의 경우 로스쿨 성적 상위권에서 지원하면 필기시험 없이 추천을 받아 선발을 하고 있다. 학문에 재능이 있지만 실무로 간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학계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돌아온 예는 아직까지 없다.

참고로 교토대의 경우 학부 법학과는 330명이고, 로스쿨은 160명인데, 로스쿨생 중 법학 既修者가 125명, 未修者는 35명이다.²¹⁾ 기수자는 7개 법과목에 관한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미수자는 일반적인 사회문제 논술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미수자는 대개 학교성적이 좋지 못하고 사법시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편이다. 따라서 학문후속세대로 기대를 받고 박사후기과정으로 진학하는 로스쿨생들도 거의 전부 기수자들, 특히 교토대 학부 법학과 졸업자들이다.

로스쿨 출신 박사후기생의 경우 외국어(특히 독어, 불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전공별로 교수가 특정 외국어를 지도하기도 하고, 외국인 교원이 가르치는 코스를 마련하기도 하며, 학생이 독일문화원 등의 어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19) 물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므로 이 점은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20) 예전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학문을 계속하기로 약속하고도 일단 사법연수소에 가면 돌아오지 않아서 우수한 학생들은 아예 가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21) 기수자와 미수자 간의 비율이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까지 실효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질문 4】 실무가 양성과 법학연구의 갈등 여부

실무가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와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명 간의 갈등은 없는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은 어떠한지?

가. 도쿄대

로스쿨 도입 후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추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이 도쿄대 교수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로스쿨생도 기초법과목 4단위(2과목)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²²⁾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하여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초법을 예로 들자면 법사회학이나 법철학은 그나마 사정이 낮지만 법제사는 특히 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라고 한다. 학교 측에서도 로스쿨 이후에는 실정법 교원을 주로 채용하고자 하므로 기초법 연구자의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 변호사가 된 이후 기초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으나, 그럴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는 것이 도쿄대 교수들의 솔직한 관찰이다.

전체 전임교원 중 20% 이상이 5년 이상 실무경험자이어야 한다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실무교원의 최저비율과 같은 요건은 없다. 도쿄대를 비롯하여 모든 일본 로스쿨에서는 여전히 연구자교원들이 교수진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소수의 실무가 출신 교원들이 추가되고 있다. 연구자교원에 관하여 교토대의 경우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암묵적 요건이 있는 것 같지만, 도쿄대는 과거에도 사법시험 합격을 요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한 요건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조교가 되는 로스쿨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므로, 사법시험에는 당연히 합격하고 조교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실무교원과 연구자교원간에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문제되고 있다. 연구자교원의 경우 실무교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실무가들의 관심 소재나 관점을 많이 의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은 교육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무교원과 연구자교원이

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로마법, 법사상사, 법사회학, 법인류학, 법정책학, 법철학, 한국법사, 법경제학 중 최소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이는 도쿄대와 매우 유사하다.

판례분석을 강의하는데 이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판례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무가들은 판례를 전제로 하고 논하지만 연구자는 판례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인데, 이런 점도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실제로 이러한 협력이 그리 잘 이루어진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예를 들어, 형소법의 경우 실무가에게 강의를 맡겼더니 판례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어 지금은 연구자만 강의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실무교원이 강의할 수 있는 강의와 연구자교원이 강의할 수 있는 강의가 구분되어 있어서 양자의 융합은 아직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나. 교토대

교토대에서도 기초법학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도쿄대와 같이 기초법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학기 로스쿨 기초법과목의 경우 ‘일본법제사’는 80여 명, ‘법의 해석과 역사’는 10여 명이 수강하여서 폐강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사법시험 성적과 학교 성적이 둘 다 중요하고, 로펌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하므로 학교 성적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로스쿨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는 좋은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로스쿨 도입이 반드시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에 나쁜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 재학 중에 예비시험을 거쳐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황폐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²³⁾

【질문 5】 겸업 대학원생의 존재 여부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겸업 대학원생들이 일본에도 있는지? 그 경우 질적 통제 (quality control)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가. 도쿄대

겸업 대학원생(일본에서는 ‘사회인’이라고 함)은 극소수의 변호사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서울법대를 비롯한 한국의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엄청난 수의 겸업 대학

23) 이와 관련하여 도쿄대, 교토대를 불문하고 많은 일본 교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비시험을 도입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조언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적어도 이 건 간담회에서는 듣지 못했다.

원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본 교수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한 점이었는데, 도쿄대 교수들은 학위가 갖는 의미가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학위공부가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와 같이 실무가가 겸업으로 대학원에 다니는 실태는 일본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일본에서 극소수의 실무가들이 겸업 대학원생 생활을 하는 이유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 교토대

교토대의 반응도 도쿄대와 같았다.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수많은 실무가, 즉 다수의 겸업 대학원생의 존재를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사회인 특별전형’이 우리의 겸업자를 지칭하는바 이러한 학생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학교로 와서 연구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학교도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법철학을 전공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교양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변호사들이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은 명함에 “박사”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교토대는 물론 일본 다른 대학에서도 변호사 등 실무가를 위해서 야간에 대학원 강의가 개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²⁴⁾ 기본적으로 판·검사를 하면서 야간에 다른 공부를 한다면 일본에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사회인 특별전형 학생들의 경우 실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부담을 주지 않고 실무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질문 6】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재원조달 및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 도쿄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서 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도쿄대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을 연구자로 붙잡으려면 과거나

2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즉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별도 직업이 있는 실무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수업이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나 모두 재정적 지원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고, 지원 액수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도 도쿄대의 경우 조교 급여는 연 300~400만 엔으로 한국의 강의연구지원조교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편이다.

한편 일본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특별연구원제도가 있다. 특별연구원제도란, 일본의 상위 클래스의 우수한 젊은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발상을 토대로 주체적인 연구과정 등을 선택하여 연구에 전념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구자의 육성·확보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DC1은 박사과정 1년차에 재학하는 자를, DC2는 박사과정 2년차 이상의 연차에 재학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월 20만 엔이다. 일본연구재단의 선발 예정 수는 DC1 700명, DC2 1,000명인데, 도쿄대 법학연구과의 경우 2013년도에 DC1 4명, DC2 2명이 선발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나. 교토대

교토대 역시 연구자 양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연구자 양성은 일본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교토대는 전국에서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한다. 교토대도 도쿄대와 마찬가지로 일본연구재단의 특별연구원제도의 지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정부보조금과 대학예산을 합하여 장학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질문 7】 외국인 유학생

일본 대학원 과정으로 유학 오는 외국학생들의 선발 기준은 어떠한지, 이들에게는 일본 학생들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가. 도쿄대

유학생 선발 시에 일본어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유학생은 우선 반년에서 1년간의 연구생 생활을 하고, 석사입학시험을 통해 석사과정에 입학하여(또는 연구생 생활시 research paper 작성으로 석사입학시험을 대체하기도 함), 석사과정을 2년간 이수한 후 논문을 완성하게 된다(이때 논문은 일본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 내지 수업은 없고, 다만 논문 작성 지원만 하고 있다. 유학생도 일본인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도 놀랍게도 많은 유학생들이 잘 따라오며 공부하고 있다.

박사과정은 많은 전공이 로스쿨 수료를 요구하고 있다(예: 형법). 외국인 학생이 석사 후 박사에 진학할 수 있는 전공은 상법, 조세법, 국법학 등 일부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은 대부분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대부분 학업을 종료한다.

나. 교토대

외국인학생의 지원자격은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로서 외국의 대학원에서 법학 또는 정치학 관련 석사과정을 수료 내지 수료예정인 자이다(다만 일본에서 전문직학위에 상당하는 외국의 대학원과정을 수료 내지 수료예정인 자는 제외). 이들의 경우 영어로 논문을 쓸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법 외에는 영어로 논문을 쓰는 예는 없다. 외국인 특별선발 석사과정 입학자 수는 <京大: 표 7-1>과 같다.

※ <京大: 표 7-1> 참고: 외국인특별선발 修士과정입학자(공법·민형사법)

년도	인원 수	년도	인원 수
2004년	6인	2009년	7인
2005년	4인	2010년	12인
2006년	4인	2011년	8인
2007년	7인	2012년	7인
2008년	7인	2013년	5인

IV. 결 어

(1) 일본 두 대학의 로스쿨 교육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훨씬 더 급격한 제도 변화를 겪은 한국 법학교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변한 것 같지 않다. 법학부가 존치되고 있으므로 자교 법학부 학생 중 일부가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수로부터 2년 더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일본 로스쿨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는 학부의 2년 연장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미국식 로스쿨과는 거리가 먼 제도인 것이다. 더구나 학부 비법학전공자(미수자)가 활발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로스쿨과 달리²⁵⁾ 일본 로스쿨의 미수자는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있어서나 학부 법학전공자(기수자)보다 현격히 열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결국 기수자의 추가 2년 과정에 가까운 모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수진에 있어서도 실무 경험을 가진 교원이 급증한 한국과 달리 종래와 같은 연구자들이 교수진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소에서 1년 수습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 역시 학교에서의 실무교육 부담을 덜어 주고 있어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둘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고민은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여전히 우수한 법학부 출신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학부가 사라진 한국 보다는 조금 더 교수 요원을 리크루트하기 쉽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단 실무에 종사하면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문적 관심을 유지하다가 학계로 돌아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이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실무 교원이라기보다는 법학자로 인식하면서 실제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일본은 그런 관행이 거의 없는데, 이 점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교수 요원 리크루트가 쉽다고도 할 수 있다. 대체로 보아 실무관련성이 높은 실정법 과목은 실무가의 학계 회귀가 상대적으로 쉽고 시너지효과도 높으므로 그런 전통이 있는 한국이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 더 쉬운 면이 있고, 반면 처음부터 전업 연구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실무와의 연계성이 약한 기초법 과목은 학부전공자를 잃어버린 한국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러한 고민에 대한 대응은 나라별, 학교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도쿄대는 종래의 조수제도를 조교제도로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유지하고, 이들을 학자로 진출시키고 있다. 교토대는 잔존 조수들은 박사과정으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박사과정생들은 로스쿨에서 주로 충원하여 박사학위를 받게 한 후 학자로 진출시키려 하고 있다. 서울대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겸업 대학원생 집단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과 소수의 전업 학문후속세대를 복수의 인재 풀로 하여 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넷째, 나라별, 학교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경향은, 로스쿨 도입 후에는 결국 이론과 실무의 거리는 좁혀지는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 한국의 경우 미수자와 기수자의 성적 차이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 물론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1학년에서의 성적은 확실히 우수하지만, 졸업평점은 평균보다 0.1점 미만의 차이로 높을 뿐이다.

점이다. 도쿄대 조교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도쿄대 법학부와 도쿄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또는 도쿄대 법학부 졸업 후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사람들로 충원되기 시작하였다. 실무경험은 길지 않더라도 적어도 실무가의 자격은 갖춘 이들이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교토대 박사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전공에서 사법시험 합격을 요구하므로 역시 실무가 자격을 갖춘 이들이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다. 한국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이 늘어나고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학문후속세대를 유지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문제에 귀결하고 있다.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은 당연히 사법시험(한국은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할 것인데, 이들이 더 큰 보수가 약속된 직장을 마다하고 학문의 길을 걷도록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도쿄대와 교토대 모두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한 유인책이 아니라는 점은 이들 대학의 교수들도 실토하고 있다. 대형 로펌의 초봉이 물가를 감안할 때에 일본보다 훨씬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 기회비용이 더 커서 학문후속세대로의 영입이 더 어렵다. 다만 한국에서는 학문적 관심을 유지한 우수한 실무가들이 학계로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면서, 일종의 심리적·문화적 인센티브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실무가 출신 학자의 경우 20-30대를 연구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구자 출신에 비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무가 출신 학자만으로 교수진 전체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 점에서 우수한 전업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로스쿨 도입”이라는 피상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관한 고민의 상당 부분은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 특히 서울법대의 경우 실무경험과 이론적 연구역량을 아울러 갖춘 상당히 건실한 교수 층이 전 연령대에 걸쳐 존재한다는 점은 오히려 일본에 시사해 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교수집단의 개방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이 우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소수의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하여 정예의 전업 연구자로 키워낸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한국이 일본에 크게 뒤떨어져 있고, 그 차이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한국은 훨씬 더 과감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선된 우수한 인재를 전업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학구적 실무가 집단” 역시 유용한 인재풀로서 계속 관리되어야 할 것이나, 그것이 전업 연구자 집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필요하다.